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0(월) 평창군수(건설과장)
- 나. 회부일자 : 2005. 10. 25(화)
- 다. 상정일자 : 2005. 10. 25(화) 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10. 25)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석명준 건설과장)

가. 제안이유

-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평창군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및 재난관리법 제43조(지역사고 대책본부)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을 통합하여 2004. 6. 1. 제정·시행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적·기반 재난에 대비한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상황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총칙"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안 제1장)
-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 직무대행 및 위임전결이 명시되어 있고,(안 제2장)
-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는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하고 있음(안 제3장)

-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는 CP개념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및 본부장의 재난 수습을 위한 총괄 지휘, 현장상황지원관 임명 파견 등 체계적인 재난현장상황 관리 지원과,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관리책임기관은 자연 인적재난의 발생 및 우려가 있을 경우 상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안 제4장)
-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는 강원도 및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과의 연계업무 총괄, 지역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과 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 보고 협의 등의 내용을(안 제5장)
- "보착"에는 합동훈련 평가 실시, 우수기관 선정, 포상, 홍보를 위한 홍보전담관 위촉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안 제6장)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 사회적 갈등 및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수직 수평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 물류, 금융, 에너지, 전기, 통신, 전산 등 국가 기능의 마비와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총괄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총괄 지휘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 각종 재난발생시 피해의 최소화와 긴급 복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평창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평창군재해대책본부운영 규정」, 「평창군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을 통합
 - 2004. 6. 1 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적·기반재난에 대비한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 검토 결과

- 지금까지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사용되어 오던 종전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재난으로 정의함에 따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및 동법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화재·폭발·교통사고 등의 재난 규모를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어
 - 관내에서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의 마비가 오는 기반재난이 발생할 경우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운영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본부 구성원의 규모가 명시되어야 하나,
 - 안 제8조(상황판단회의)에서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통제관·종합 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책본부 구성원의 소집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 피해의 최소화와 긴급 복구를 위해 제정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 이를 부합시키기 위하여는 규칙에서 재난발생시 필수 소집요원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부 끝.